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 사 시 간	주 일	토요일 주일 :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2:00 (중·고등부)	15:00 (유·초등부)
	18:00 (청년)	21:00 (밤)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김인기 베드로 010-5311-7604/869-5965	

● 모임

단 체 명	일 시	장 소
우리어머니 Cu.	10월 12일(일) 11:40	교육관
사도들의 모후 Cu.	10월 12일(일) 11:40	식당
사목회의	10월 16일(목) 19:40	식당

● 알림

- 오늘(10월12일)은 군인주일로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살레시오 성소후원회 미사 10월 13일(월) 10:30
- 10월 15일(수) 11시 경로당 웰레미사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10월 17일(금) 병자영성체는 구역별로 있습니다
- 10월 19일(일) 전교주일로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다음 주일(10/19) 청소 담당 : 5구역

● 신자 신앙교육 10월 특강 안내

일 시	주 제	강 사
10/13(월)19:40	투쟁의 사람, 시몬	주임 신부님
10/20(월)19:40	베일에 싸인 사람, 야고보	
10/27(월)19:40	질문하는 사람, 토마스	

● 16지구 지구장 신부님 본당방문

- 10월 12일(일) 교중미사 주례
- 식당에서 설렁탕과 수육 판매합니다.

● 예비자 교리반 모집

- 첫모임 : 11월 2일(일) 9시 1교리실
- 세례식 : 2026년 부활 대축일
- 신청 : 본당 사무실

● 축 세례성사

지난 9월 21일 세례성사로 하느님 자녀가 되신 새 신자들에게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역/반	성 명	세례명
4 / 4	박성진	토마스아퀴나스
5 / 2	백동인	시몬
6 / 4	박병철	베네딕토
14 / 1	박경민	카타리나
14 / 2	장평순	마리아
18 / 2	이순덕	데레사
22 / 4	여복점	요안나

● 제62주년 구로3동 성당 본당의 날

- 일시 : 10월19일(일) 교중미사후
- 온가족과 함께하는 본당 축제
- 본당의 날 미사 안내

10월 19일 (일)	06:30, 10:30, 18:00, 21:00 (12:00, 15:00 미사는 없습니다.)
----------------	--

● 2026년 달력 광고 모집

- 2026년 본당 달력 광고를 모집합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접수처 : 본당사무실 02-857-8541

● 전입교우 환영합니다

(7월~8월)

구 역/ 반	성 명	세례명	이전 본당
1/4	김태훈	디모테오	명일동
5/5	이수빈	리따	원주교구/태장1동
14/4	정다현	미카엘라	명동
16/3	박형수	안셀모	목동
21/3	박혜선	요셉	대림3동
23/4	전준익	프란치스코	대방동

● 우리들의 정성(9월 24일 ~ 9월 30일)

- 교무금 8,833,000원
- 주일헌금 4,417,000원
- 감사헌금 신기자10만원 김화○20만원 황정후 5만원
김재금 5만원 구상호10만원 김시아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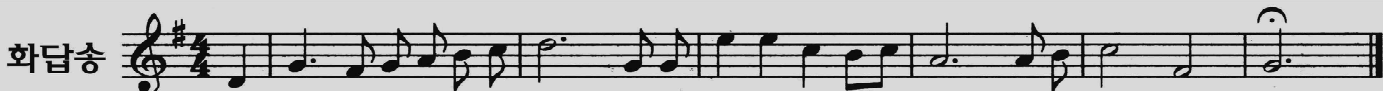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설	복사	독서
10/12	황원선	신종구 장희석	임종윤 민옥경
10/19	백희자	김영균 임종윤	안상록 구민서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0/12	김용진	김영균	박용환 최승일
10/19	도현만	김용진	하재민 최영만

성가번호 ♪ 입당 : 441 ♪ 예물준비 : 212, 220 ♪ 영성체 : 173, 174 ♪ 파견 : 250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제 2 편 전례와 성사

제 2 장 성 사

제 7 절 혼인성사

제 3 관 혼인장애

제 107 조 (혼인공시)

1항 혼인할 사람들은 혼인하기에 아무 장애도 없음이 혼인 전에 확인되어야 한다(교회법 제1066조 참조).
2항 혼인 당사자들에게 혼인장애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혼인공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혼인 당사자들의 진술서 및 교적과 호적등본 또는 기타의 근거로 혼인장애가 없음이 확인되면 혼인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교회법 제1067조;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4조 참조).

제 108 조 (혼인장애)

1항 하느님의 법과 교회의 법에 따라 사제가 관면할 수 없는 장애를 제외하고, 그 밖에 교회의 법에 따른 장애에 대하여는 중대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제는 이를 관면할 수 있다(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5조 참조).
2항 하느님의 법에 따라 관면될 수 없는 장애는 다음과 같다.
1.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혈족 장애(자연법; 교회법 제1078조 3항.제1091조 참조)
2. 성교불능 장애(자연법; 교회법 제1084조 참조)
3. 혼인유대 장애(마태 19,6; 마르 10,9; 교회법 제1085조 참조)
3항 교회의 법에 따라 사도좌만 관면하는 장애는 다음과 같다(교회법 제1078조 2항 참조).
1. 성품 장애(교회법 제1087조 참조)
2. 수도 종신서원 장애(교회법 제1088조 참조)
3. 범죄 장애(교회법 제1090조 참조)

제 109 조 (국법상 금지된 혼인)

한국 민법이 금지한 혼인은 다음과 같다. 사제는 비록 교회법상으로 그 장애를 관면할 수 있는 경우라도 교구 직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혼인을 주례하지 말아야 한다(교회법 제1071조;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5조 참조).

1항 (중 혼)

배우자가 있는 자는 혼인하지 못한다(교회법 제1085조; 민법 제810조 참조). 이 장애는 아무도 관면할 수 없다.

2항 (연 령)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전에는 혼인하지 못한다(교회법 제1083조; 민법 제807조 참조).

3항 (혈 족)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교회법 제1091조; 민법 제809조.제815조 2호 참조). 양자관계 장애도 여기에 포함된다(교회법 제1094조 참조).

4항 (근 친)

남계 혈족의 배우자, 남편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민법 제809조 2항.제815조 3호 참조). 직계의 인척 장애와 내연관계 장애도 여기에 포함된다(교회법 제1092.1093조 참조).

5항 (사기 및 강박)

혼인 당사자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제1098.1103조; 민법 제816조 3호 참조). 유괴 장애도 여기에 포함된다(교회법 제1089조 참조).

6항 (악성 질병 및 기타 이유)

혼인 당사자에게 부부생활을 저해하는 악성 질병이나 기타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혼인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민법 제816조 2호 참조).

7항 (재혼 금지 기간)

여자는 먼저의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다만 혼인관계가 끝난 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811조 참조).

8항 (동성동본)

동성동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민법 제809조 1항).